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하 충 룡* Choong-Lyong Ha
김 은 빈** Eun-Bin Kim

목 차

I. 서론	IV. 비교분석
II.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V. 결론
III.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미국변호사, 뉴욕주), 제1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계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제조물결함, 입증책임, 한국 제조물책임법, 미국 제조물책임법

I. 서론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에 법률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 일부 개정된 후 2017년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을 거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을 최근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민중(2016), 황현아(2017)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전 개정방향에 대해 서술하였고¹⁾ 서희석(2017)의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후 개정된 내용과 그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²⁾ 송오식(2017)은 최근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있다.³⁾

본 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⁴⁾ 제품 결함을 비롯해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손해배상액 또한 감당하기 어려워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기업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해 대다수의 선진국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실정이다. 하충룡·김은빈(2018)의 선행연구에서 미국은 1906년대부터 판례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이 확립되었고, 그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배경 및 과정을 통

- 1) 황현아,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변화 방향”, 「KIRI Weekly(주간포커스)」, 제420권, 보험연구원, 2017, pp.1-10.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pp.289-335.
- 2)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법」, 제8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p.137-169.
- 3) 송오식, “최근소비자정책과소비자입법동향”, 「민사법연구」, 제25권, 대한민사법학회, 2017, pp.117-141.
- 4) 제조물책임법 제1조.

해 다른 선진국들에 본보기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⁵⁾ 제품 제조사가 고객에게 초래한 손해에 관한 책임인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백만 건의 제조물책임 사건이 주 또는 연방법원에 매년 제기되며, 수천 또는 수 백 만 명의 개인이 원고로 참여한다. 제조물 배상 소송의 법적 기반은 제조결함, 설계결함, 경고결함에 관한 책임을 포함하여 광범위하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례는 특히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제품에 관한 것으로 언론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⁶⁾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을 통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약 40년의 기간 동안 과실책임을 적용되었고, 1944년최초의 엄격책임의 법리가 인정되면서 시장에 출시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통해 제조물책임에 새로운 표준을 정의하게 되었다.

제조물 책임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브라질, 대만, 중국, 러시아 등에서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이 제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다.⁷⁾ 특히 유럽연합 및 아시아에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됨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권상로(2014)는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고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검토하였고,⁸⁾ 김현아(2014)의 연구에서는 중국 국제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 연구하여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⁹⁾ 김민동(2015)은 정보 비대칭성관계에서의 책임법리와 안전규제법리와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행정규제 규정을 단일법전으로 통합한 이탈리아의 소비법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의 시사점을 주며¹⁰⁾ 김성천(2016)은 2015년 일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내용 및 제안이유를 검토하여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¹¹⁾

제조물책임법은 그 기준 또는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닌 당시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진보 또는 소비자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가 가장 빠른 법 분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5) 허충룡·김은빈,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pp.3-23.

6)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The uneasy case for product liability”, Harvard Law Review, Vol.123 No.1437,2010,pp.1438-1439.

7) 이승욱·이홍무, “대일(對日) OEM방식 수출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험의 유효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0권 제2호, 1998, p.2.

8) 권상로, “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한양법학회」, 제45권, 한국법학회, 2014, pp.79-97.

9) 김현아,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pp.183-223.

10) 김민동,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의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pp.95-126.

11) 김성천, “일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제안 동향과 시사점”, 「월간소소비자정책동향」, 제74호, 한국소비자원 2016, pp.1-20.

기업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기업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완한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

Ⅱ.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1. 성립배경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은 미국 역사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적 현상 중 하나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는 주로 판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법정에서는 전통적인 법 이론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했다. 전통적인 과실책임을 통해 점차 제조업자의 책임을 확대했고 제조물책임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과실책임은 *Winterbottom v. Wright*¹²⁾ 사건에서 적용되었는데, 결함이 발생한 제품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제조자에게 과실 조치를 할 수 없는 원칙을 정립하여¹³⁾ 반세기 동안 적용되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실 두 가지 정도가 더 발생했다. 첫 번째, 제조업자가 위험한 것으로 알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에게 “사기로 여겨지는 것(something like fraud)”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¹⁴⁾ 두 번째는 마약, 음식, 음료, 폭발물 및 총기류를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품으로 부터 사용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했다. *Lewis v. Terry*¹⁵⁾의 사건에서 두 가지 예외 사항 중 첫 번째는 불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채택하였다. 그 이후 사건들에서도 채택되었다.¹⁶⁾ 1916년 뉴욕에서 역사적인 결정¹⁷⁾에서 Cardozo판사는 “내재 된 위험”에

12) *Winterbottom v. Wright*, 10 M. & W. 109, 152 Eng. Rep. 402 (Ex. 1842).

13) 하충룡·김은빈, 전제논문, pp.12-13.

14) 가장 초기의 사건은 *Langridge v. Levy*, 2 M. & W. 519, 150 Eng. Rep. 863 (Ex. 1837).

15) *Lewis v. Terry*, 111 Cal. 39, 43 Pae. 398 (1896).

16) *Baker v. Sears Roebuck & Co.*, 16 F. Supp. 925 (S.D. Cal. 1936). *Cliff v. California Spray Chem. Co.*, 83 Cal. App. 424, 257 Pae. 99 (1927). *Tingey v. E. F. Houghton & Co.*, 30 Cal. 2d 97, 179 P.2d 807 (1947). *Call v. Union Ice Co.*, 108 Cal. App. 2d 303, 239 P.2d 48 (1951).

외를 확대했다. 제조물을 태만하게 다루었을 때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제조업체는 제조물을 안전하게 제조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Cardozo는 언급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로 모든 제품에 주의 의무가 포함되어 의무가 부과된 재화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약 40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과실책임을 적용하였다.

미국에서 엄격책임은 1944년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사건¹⁸⁾을 통해 최초로 엄격책임의 법리가 인정되었고, 1960년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 사건¹⁹⁾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업체에게 엄격책임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1963)²⁰⁾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통해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엄격한 불법행위 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정의하게 되었다. *Second Restatement of Torts*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경우 엄격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다.²¹⁾ 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예측하면 결함이 없는 제품의 사용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자의 엄격한 책임은 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엄격한 책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생산방식의 결함이 아니라면 적어도 제품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Dean Prosser*(1960)에 따르면 엄격책임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 매우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²²⁾ “인간의 생활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제품에서 위험한 결함에 대해 법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를 요구한다”고²³⁾ 서술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결함 있는 제품의 판매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책임 원칙을 채택한 법원들이 많아짐을 볼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엄격책임에 대한 정책을 확장하고 정의하는 시기였다. 각 주가 엄격책임을 채택하면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²⁴⁾ 10년 동안 엄격책임은 지리적

Crane v. Sears Roebuck & Co., 218 Cal. App. 2d 855, 32 Cal. Rptr. 754 (1963).

17) *MacPherson v. Buick Motor Co.*, 217 N.Y. 382, 111 N.E. 1050 (1916) 판결을 통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18)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24 Cal. 2d 453, 150 P.2d 436 (1944).

19)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 32 N.J. 358, 161 A.2d 69 (1960).

20)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M.2d 57, 62 (1963).

21) *RESTATEMENT (SECOND), TORTS §402A* (Tent. Draft No. 10, 1964).

22) Prosser, “The Assault Upon the Citadel”, *The Yale Law Journal*, Vol.69 No.7, 1960, pp.1099-1126.

23) Prosser, *op.cit.*, p.1122.

측면에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점차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엄격책임은 제품의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인 피고와의 소송에서도 자리 잡았고, 제품 제조업체와 제품 사용자인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책임 혼합을 위해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정책의 연장, 본질적 탐구, 그리고 적절한 한계의 탐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엄격책임을 채택하면서 제조물책임소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배상액이 급증하고, 거대피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보험파동 등으로 1976년,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제조물책임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의 제한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도입 등으로 제도적 또는 입법적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⁵⁾

1976년, 1985년 두 차례 발생한 위기로 엄격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97년 5월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가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²⁶⁾ 미국의 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다음 각 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 사고가 통상 제품결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일 것 ii) 당해 사건에서, 사고가 오로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결함 이외에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제3차 Restatement 제3조). 그리고 제품결함이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가한 원인인지 여부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제3차 Restatement 제15조).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기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목적에 맞게 제조물책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외국 중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추정

24) Henderson and James A., Douglas A. Kysar, and Richard N. Pearson, 「The torts proces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7

25) 이은섭,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p.882.

26) 김민중, 전계논문, p.304.

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엄격책임에서는 결함요건과 인과관계를 피해 소비자인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소비자인 원고가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함에도 그 제조물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판례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원고인 미국의 소비자는 입증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가 입증한 결함에 의한 피해 내용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엄격책임 원칙을 통해 제조결함을 입증하려 했던 *Murnane v. Sony Electronics, Inc.* 사건²⁷⁾은 2007년 9월 원고는 자신의 집에 사용할 새 SONY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텔레비전은 손상 없이 완전 포장된 상태로 배송되었고 원고는 집안 거실의 나무선반 위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였다. 2012년 1월 텔레비전 화재로 인해 원고의 집이 부서졌고, 텔레비전은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에도 다른 전자제품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원고는 원고의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SONY 텔레비전의 제조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엄격책임에 의한 제조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제품이 제조업체를 떠날 때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했지만, 원고 측은 텔레비전의 제조결함을 입증하지 못했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텔레비전이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도 텔레비전 구매 후 4년이 지났고 문제없이 사용되었기에 이 사실도 입증할 수 없었다. 사실 내용 부족으로 원고는 패소하였다. *Kucik v. Yamaha Motor Corp., U.S.A.* 사건²⁸⁾은 원고가 자신의 Yamaha 오토바이가 결함 있는 흡기밸브로 설계, 제조되어 판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현재 오토바이와 구성품의 상태를 검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가 되는 흡기밸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피고 측에서 밸브를 교체한다면 결함 있는 밸브로 교체되어 오토바이가 또 결함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밸브를 교체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수리한 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역시 법적 범인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서로의 공방이 오고감에 있어 법원은 오토바이 주인인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사고와 부상을 초래한 제조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제품결함청구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원고가 결함이 있는 밸브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인된 정비공의

27) *Murnane v. Sony Electronics, Inc.*, F.Supp.3d, 2014 WL 12537080.

28) *Kucik v. Yamaha Motor Corp., U.S.A.* F.Supp.2d 2010 WL 2694962.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결론은 제조업체의 밸브를 회수하는 것으로 내려졌다. Lassen v. Nissan North America, Inc.²⁹⁾사건에서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 키리스 시스템(keyless system)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탈출한 후 차량을 운행 중지할 수 있는 자동 차단 기능이 없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 기능에 의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소비자 보호법 등의 혐의로 차량제조업체에 유죄등급의 조치를 취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품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대 테스트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도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될 때 예상대로 안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면 설계상의 결함이다. 또 제조업체는 사용자에게 의한 제품의 오용 및 남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사건은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제도로 알려졌다. 1966년 미국 대법원이 집단소송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고 집단 소송의 까다로운 요건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모든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으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스프레이 폭발사고³⁰⁾로 원고가 스프레이 폭발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그에 따른 치료와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엄격책임에 근거하여 설계결함, 경고결함, 제조결함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증 위반을 통해 진술하였다. 원고의 주장 내용은 현재와 추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미래의 재활비용 및 제약비용에 대해 말하였다. 판결은 원고가 엄격책임에 입각하여 입증됨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피고는 회사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다.

위 판례들을 통해 엄격책임을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제조물결함의 입증내용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가 패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제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비해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으므로 제조물에 대한 입증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엄격책임의 적용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엄격책임의 입증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되어 어렵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논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소비자 권리가 높음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29) Lassen v. Nissan North America, Inc, 211 F.Supp.3d 1267(2016).

30) Miccio v. Conagra Foods, Inc., 224 F.Supp.3d 200, 2016.

Ⅲ.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1. 성립배경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성립배경은 미국의 성립배경과는 차이가 있다. 주로 판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된 미국의 제조물책임법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제조물책임정신이 생겨난 이후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의 무게가 점차 무거워짐에 따라 현재 상황과 미래에 걸맞게 소비자를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었다. 백재현 의원이 2016년 5월 30일에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³¹⁾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대안을 거쳐,³²⁾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³³⁾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 3월 30일 본 회의에서 가결되었다.³⁴⁾

제조물 대부분이 점점 더 복잡하게 설계되고 있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도 제조물이 정상적인 사용법으로 사용될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³⁵⁾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제조하여 판매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³⁶⁾

31)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9, 발의일자 2016.5.30.

32)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된 법안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35, 발의일자 2016.7.1, 조정석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49, 발의일자 2016.7.2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06, 발의일자 2016.8.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15, 발의일자 2016.8.4, 신상진의원대표발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 의안번호 3500, 발의일자 2016.11.11. 대안의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계류하는 법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제조물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4, 발의일자 2016.6.8,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58, 발의일자 2016.6.29, 우원식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325, 발의일자 2016. 12.12,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자 5458, 발의일자 2017.2.7.

3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6505, 제안일자 : 2017.3.

제5차 정부위원회(2017년 2월 24일)는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6505, p.3.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개보고서, p.3.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손해배상 조항을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피해의 입증책임 일부를 기업에 두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⁷⁾ 개정안에서는 기존법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해 명시했다.³⁸⁾ 징벌적손해배상은 신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에는 피해를 방조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설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³⁹⁾

제조물 관련 손해배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피해 입증책임’의 일부를 기업이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손해 여부는 물론 제조물의 결함 여부까지 입증해야 하는 탓에 대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첫째, 제조물이 정상적 사용법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둘째, 손해가 제조업자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셋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3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개정되었다. 간접사실을 입증한다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⁴⁰⁾

2.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태도

1) 개요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전 우리 제조물책임법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⁴¹⁾ 현

37)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

38)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 신설 2017.4.18.

3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 개정 2017.4.18.

40)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 본조신설 2017.4.18.

41) 서희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제정비의 과제-가습기살균제사건을 계기로”, 「청파법학」, 제13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2016, p.10.

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비자에게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본 법률에 의거하여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이 아직도 상당히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⁴²⁾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제조물책임소송은 주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판결을 내렸다. 제조물 제정 전 제조물결함사고가 불법행위에 의해 적용되는 시기에는 과실주의 원칙에 따라 결함의 존재와 제조자가 과실과 책임의 내용까지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였다.⁴³⁾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분야를 접근하기가 어렵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 의무를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는 확인이 어렵다.⁴⁴⁾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입증내용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⁴⁵⁾ 이 때문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경감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사실상의 추정, 엄격책임 등에 의하여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일정한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내용들이 시도되었다.⁴⁶⁾ 경상사료 사건⁴⁷⁾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에 걸려 산란율이 낮아진 사건으로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그 불순물이 작용을 일으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사료에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됨이 판시되어 사실상 추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입증책임을 완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2는 신설조문으로 소비자가 정상으로 제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해석되고, 제조업자가 결함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반증하여야 소비자가 입증한 내용이 깨진다는 이론인 ‘간접반증이

42) 최명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58, 2016.6.29, p.1.

43)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법조』, 제54권 제4호, 법조협회, 2005, p.84.

44) 백경희·이인재,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2, p.22.

45) 황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한독법학』, No.8, 한독법률학회, 1990, pp.127-128.

46) 배경희·이인재, 전개논문, p.22.

47)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

론'을 조문화한 것으로⁴⁸⁾ 간접반응이론은 대법원판례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 전부터 인정받은 이론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 간접반응 이론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면, 최초로 간접반응이론을 적용한 TV폭발사건⁴⁹⁾으로 텔레비전을 정상적인 이용 중에 폭발하여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는 제조업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조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써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에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된 상황에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사고가 제조업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과실 없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때, 제조업자가 사고가 소비자가 입증한 요인 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제품은 유통 단계에서 이미 합리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또 다른 판례로 자동차급발진사건⁵⁰⁾은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를 P(주차)에서 D(진진)로 작동하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직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고 전진하면서 다른 주차차량과 음식점 벽면을 잇달아 충격한 후 정지하였다. 본 사건에서도 간접반응 이론을 적용하였지만, 간접반응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의 주장인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지배영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급발진사고가 원고의 주장인 제품결함으로 발생되었음을 추정할 수 없었다. 비료불량사건⁵¹⁾에서도 위와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비료의 포장지등에 명시된 설명방법을 소비자인 원고가 설명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을 토대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 제조물에서 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과 달라진 점은 제3조 2항의 제2호에서 '배타적인' 지배영역을 '실질적인' 지배영역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였고 제3호에서는 '과실'을 '결함'으로 변경하였다.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논리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

48) 서희석, 전개논문, p.150.

49) 대법원 2000.2.25, 선고,98다15934,판결.

50) 대법원, 2004.3.12, 선고,2003다16771,판결.

51) 대법원, 2006.3.10,2005다31361.

고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 가지 입증사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제조물책임법 신설조항 제3조 2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신설 조항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후 판례를 통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IV. 비교연구

1. 엄격책임의 엄격성

많은 나라들이 제조물결함에 있어 엄격책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또한 엄격책임을 실시하고 있다.⁵²⁾ 엄격책임에는 두 가지 법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첫째, 무과실 책임 법리로 제조자는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품 결함 자체에만 책임을 가진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당시 ‘소비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조자는 당연한 책임을 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입증책임 완화 법리로 소비자는 제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 다른 원인이 요인임을 반증하지 못하면, 시장에 제품을 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⁵³⁾

한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의 엄격책임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과실 책임과 명확한 손해배상규정이 확립되어있지만, 제조업자의 책임에 있어 면책 사유를 두어 그 적용 범위를 모호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판매할 그 시점의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라는 면책조항은 엄격성이 떨어지는 논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⁵⁴⁾

미국은 위에 언급한 한국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DES 사건’⁵⁵⁾

52) 윤혜진,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 「철학연구」, 제135권, 대한철학회, 2015, p.335.

53) 윤혜진, 전계논문, p.335.

54) 윤혜진, 전계논문, p.337.

55) DES(diethystrbestrol)는 1937년에 영국의 의사가 인위적으로 합친 여성호르몬제의 일종인 유산방지제로, 1940년에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고, 1970년까지 많은 양이 판매된 의약품이다. 1971년이 되던 해에 이를 복용한 임산부들의 아기들은 음경발달부진과 불임이 나타났다. 미국 식약청은 질병과 약품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고 1972년에 이 약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을 통해 미국법원은 제조물 엄격 책임을 개념을 확장하는 제조물 책임 기준인 ‘제조물 절대 책임’(absolute product liability)을 수립했다. 제조물 절대책임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의 위험성이 제조할 당시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결함이 드러나면 발견된 결함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가진다. 위에 언급한 논란 외에도 미국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제조자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Rylands v. Fletcher 사건⁵⁶⁾에서 제조물 자체에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엄격책임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⁵⁸⁾ 이에 대해 총기사고의 피해자들에 의해 고위험 행위이론(The Ultrahazardous Activity Theory)이 주장되고 있다. 고위험 행위이론은 불법행위에 있어 최고도로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에 관계된 가해자들이 다른 이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엄격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⁵⁹⁾ 미국에서 엄격책임은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인정되었고, 대부분 위험한 행위에 관련된 제조물에 있어 위험책임이 적용되었다.⁶⁰⁾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고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 책임을 적용하여 범위를 확장시켰다.⁶¹⁾⁶²⁾ 이외에도 엄격책임확장에 관한 것으로 시장점유책임(market share liability)기준⁶³⁾과 악의적 제품훼손(malicious product tampering)에 대한 기업 책임이 있다. 악의적 제품훼손에 대한 기업책임은 1982년 발생한 존슨 앤 존슨의 타이레놀 사건⁶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엄격책임은 한국의 엄격책임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고 엄격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제조물 절대 책임이론에

56) Rylands v. Fletcher L.R. 3 H.L. 330 (1868).

57) 영국판례로 불법행위법 내 엄격 책임 법리를 창안한 판결로 유명하다. 이 판결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상관없이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원칙이 생겼다.

58) John L. Diamond, “Eliminating the “Defect” in Desing Strict products Liability Theory”, THE HASTINGS LAW JOURNAL, Vol. 34, 1983, pp. 529-549에서는 고전적인 엄격책임은 비정상적으로 위험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에게 책임이 부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9) 류창호, “제조물책임에서의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에서의 제품분류책임”, 『아주법학』, 제11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p. 47-48.

60) Restatement of Torts §§ 519~520 참조.

61) Restatement of Torts §§ 519~520 참조.

62) 류창호,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pp. 74-75.

63)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특정 제조업체를 소비자가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게 분명하다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모든 제조업체는 그 제품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4) 타이레놀 사건의 내용은 존슨 앤 존슨에서 생산한 타이레놀을 투여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시작되어 조사 결과, 7명 모두 확인 되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독극물을 삼입한 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된 후, 미국 식약청은 시카고에 제공된 약품을 모두 회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존슨 앤 존슨은 수천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 모든 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타이레놀 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파기했다. Archic B. Carroll and Ann K. Buchholtz, op.cit. p.316.

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당시 상황이 결함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후에 제조물에 있어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이론이 적용되고 있었고, 총기와 같은 위험한 제조물이 제조되고 있는 미국에서 초 위험 행위이론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격책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도 점점 엄격성이 강해져 제조업자에게 강한 엄격성을 부여하여 제조물의 완성도를 높여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점차 적어져야 한다.

2. 소비자 분쟁해결

한국의 소비자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에 따라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 촉진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도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민법에서는 입증범위를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그리고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증명해야했지만, 제조물책임법 후에는 제조물의 결함여부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제조물책임법 제정 전에는 소비자 측이 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제조자는 과실해명만 하면 되고 피해자들은 개별로 대응함에 따라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시행 후에는 소비자 단체소송과 제조물관련 접수가 증가하였다. 제조물 책임관련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 피해처리를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절차로 두고 있으며, 14개 상품 분야에서 제조물책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센터 내에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있다.⁶⁵⁾⁶⁶⁾ 이처럼 한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그리고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자에게는 과도한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⁶⁷⁾ 미국의 사법절차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 소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소비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가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

65) 강창경, “제조물책임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03, p.72.

66) 제조물책임센터는 단체별, 업종별로 14개구를 설치 운영하여 ① 제조물의 품질에 관한 일반상담은 물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및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상담하고 있다. ②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여부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③ 관련 판례,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67) 나경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사례-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기술표준원, 2002, p.18.

되고 있는 이유로 단체소송이나 고액이 되기 쉬운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고, 소송에 의할 경우 배상액 등이 예상외로 커질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8년 미국의 연방 ADR법(Alternative Dispute Act(28 USCA))은 각 연방지방법원에 하나 이상의 ADR을 갖추도록 요구하였고, 이는 법원과 연계된 ADR에 대한 기본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법원의 경우 연방지방법원에 ADR에 관한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연방 항소법원에도 ADR이 설치되어 있다. 대다수의 주(state)지방법원에 한 곳 이상의 ADR이 운용되고 있다. 미국 내 35개 주에서도 ADR을 통할하는 관청이 갖추어져있다.⁶⁹⁾ 정부 차원에서도 ADR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⁷⁰⁾ 사회에서도 많은 개인소유의 ADR기관이 운영되고 있다.⁷¹⁾ 그리고 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로스쿨에서 ADR에 관한 과목이 강의되고,⁷²⁾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ADR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⁷³⁾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미국의 ADR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아동기부터 교육을 통해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리 아래 각 지자체에서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소비자 분쟁제도는 제조물책임 센터를 아래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이다.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체계적으로 형성 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3. 입증가능성

개정법의 입증책임의 전환은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해줌에 따라 입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종래판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68) 맹수석·김은경,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pp.103-113.

69)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법소송학회, 2009, p.493.

70) Daniel Marcus and Jeffrey M. Senger, “ADR and the Federal Government”, Missouri Law Review, Vol.66, 2001, pp.709-713.

71) Jack M. Sabatino, “ADR as Litigation Lite: Procedural and Evidentiary Norms Embedded with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mory Law Journal, Vol.47, 1998, pp1289-1301.

72) Frank E. A. Sander, “The Future of ADR”,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0,2000, pp.4-6.

73) Tricia S. Johns,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s: The Field, The Findings, and The Future”,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Vol.22 No.1-2,2004,pp.233-243.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추정해왔다. 이는 대부분의 제조물이 복잡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 사용법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손해가 제조업자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3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손해가 발생됨을 추정하도록 개정되었다.⁷⁴⁾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증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인 원고 측에 있다. 미국은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지 않고 그 제조물을 사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제조물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 증명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증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 결함의 존재, 제조물과 결함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3가지 내용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 3가지의 내용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다. 한국에서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같이 소비자가 정보 비대칭에 의해 입증하기 힘든 사실보다는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사실로 입증한다면, 입증가능성을 높이고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음으로 판단된다.

4. 소송접근성

한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시행 후 현재까지 제조물에 관련된 사건은 40건이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사건은 그 보다 적다.⁷⁵⁾ 제조물책임에 대한 피해가 점차 다양하고 광범위 하게 발생함에

74)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 본조신설 2017.4.18.

75) 항공기결함사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자동차 급발진사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비료사건(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담배소송사건(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갑기약 “콘택600”사건(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스프링클러사건(대전지법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발코니확장공사사건(수원지법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담배소송사건(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제조물결함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혈액제제사건

따라, 종전의 소송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제조물책임소송을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했다.⁷⁶⁾ 하지만 소비자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집단소송은 총 7건⁷⁷⁾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7건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은 없었다.

미국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국가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국가로 미국 소비자들은 불법행위를 행한 제조업자를 상대로 당연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대부터 불법행위법이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원고의 승소확률이 20%에서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Viscsi의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엄격책임원칙의 채택은 소비자의 승소 가능성을 20%나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⁷⁸⁾ 미국의 소비자가 소송 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미국식 opt-out방식⁷⁹⁾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논의가 있지만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opt-out방식이 보다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소송 접근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재 소송제도에서는 손해를 본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 입증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저지른 불법행위 내용, 피해자의 손해와 기업의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입증해야한다. 하지만 미국의 집단소송의 제도는 입증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입증해야하고, 기업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소비자에게 준 피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집단소송 제도가 존재하지만 두 나라에 같은 제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은 소송한 당사자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배상금만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배상금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소송접근성은 소송 후 입증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소비자가 당당하게 소송하며 소송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차이에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76) 최광선,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의 관한 제언”,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245.

77)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무단사용사건(09.1.23, 사건종결), 티머니카드 환불거부사건(1심 원고 패소, 서울중앙 2015가합27137 '17. 7. 18.):항소 중), 이동통신 3사 사건(피고 SK텔레콤, 1심 원고패소(서울중앙 2015가합27144 '17. 8. 31.): 항소 중), 이동 통신 3사 사건(피고 KT, 1심 원고 패소(수원지법 2015가합 71866 '17. 9. 26.):항소중, 이동통신3사 사건(피고 LG유플러스, 1심 원고패소(서울서부 2015가합39203 '17. 11.2.): 항소중, 한국전력 누진요금 부과사건pp.103-113.(2017년 11월 광주지법 1심 진행 중),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제한 사건(소송허가절차 진행 중)

78)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자료, 1996, p.15.

79) opt-out방식은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별도의 소송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집단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방식을 말한다. opt-out방식은 소송비용이나 법원의 업무경감 이외에도 간단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 가능한 장점이 있다.

5. 요약

한국과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를 4가지 기준을 통해 연구해보았다. 그 중 첫째, 엄격책임의 엄격성은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여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엄격성을 따짐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제조물책임의 경우 위의 내용에 대해 제조물 절대책임(absolute product liability)을 도입하여 제조물 엄격책임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자나 판매자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엄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고위험 행위이론(The Ultrahazardous Activity)을 통해 극도로 위험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초 위험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더욱 강하게 다루고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 측면에서 한국은 제조물책임의 목적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피해상담을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절차로 두고 상품에 따라 제조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있다. 소비자권익을 위해 제조물책임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 중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AD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할하는 35개 주에 관청을 설치하고, 정부와 법원, 민간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로스쿨까지 강의를 통해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세 번째, 입증가능성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한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동일한 입증내용 외에도 2가지의 내용을 더 입증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국에 비해 입증할 내용이 더 많아 입증가능성이 낮았다. 입증해야할 내용이 많아지게 된다면 정보의 비 대칭면에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소송접근성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 집단소송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한국은 손해를 본 피해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하지만 미국은 입증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가 기업에서 입증을 한다. 배상금 역시 한국은 소송 당사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배상금만 청구하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배상금을 대표로 청구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소송제도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송이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을 통해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맞게 한국의 집단소송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V. 결 론

가습기살균제사건을 통해 제조물결함과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더욱 더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슈를 넘어 현재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더 걸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인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배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점이다. 미국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있어 결함의 입증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입증책임은 큰 역할을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보호라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에 걸맞게 신설내용을 통해 피해소비자의 입증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이런 구체화된 입증내용에서도 논란의 내용이 존재하며, 복잡해지는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에 있어서 구체화된 조문 내용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입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개정시행의 초기 단계로 여전히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본 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만으로도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비교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선진국들의 소비자 보호에 있어 좋은 점들을 모아 완성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계점으로 이론적 배경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서술하였지만, 아래에서는 아직 개정안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용된 최신 개정안의 판례를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 대신 현재 개정안의 입증책임에 있어 적용되는 이론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 따른 판례를 소개하면서 적용된 이론의 적절성이 서술되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된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며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되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여 상세히 서술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강창경(2003), “제조물책임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p.72.
- 권상로(2014), “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한양법학회」, 제45권, pp.79-97.
- 김민동(2015),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의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pp.95-126
- 김민중(2016),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pp.289-335.
- 김성천(2016), “일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제안 동향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74호, pp.1-20.
- 김제완(2005),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합리적대체설계의 입증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법조」, 제54권 제4호, p.84.
- 김현아(2014),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pp.183-223.
- 나경수(2002),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p.18.
- 류창호(2017),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pp.74-75.
- 류창호(2017), “제조물책임에서의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에서의 제품분류책임”, 「아주법학」, 제11권 제3호, pp.47-48.
- 맹수석·김은경(2017),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pp.103-113.
- 백경희·이인재(2012),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정희법학」, 제47권 제3호, p.22.
- 서희석(2016),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제정비의 과제-가습기살균제사건을 계기로”, 「청파법학」, 제13호, p.10.
- 서희석(2017),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pp.137-169.
- 유병현(2009),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p.493.
- 송오식(2017), “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민사법연구」, 제25권, pp.117-141.

- 윤진아·김상태(2017),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pp.59-77.
- 윤혜진(2015),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 「철학연구」, 제135권, p.335.
- 이승욱·이홍무(1998), “대일(對日) OEM방식 수출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험의 유효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p.2.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6505, pp.3-4.
- 최광선(2018),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의 관한 제언”,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p.245.
- 최명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58, 2016.6.29, p.1.
- 하충룡·김은빈(2018),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pp.3-23.
- 한국소비자보호원(1996),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자료, p.15.
- 허재창(2002), “한국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p.178.
- 황적인(1990),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한독법학」, 단일호 pp.127-128.
- 황현아(2017),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변화 방향”, 「KIRI Weekly(주간포커스)」, 제420권, pp.1-10.
- 이은섭(2001),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부산대학교 출판부, p.882.
- Daniel Marcus and Jeffrey M. Senger(2001), “ADR and the Federal Government”, Missouri Law Review, Vol.66, pp.709-713.
- Frank E. A. Sander(2000), “The Future of ADR”,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0, pp.4-6.
- Jack M. Sabatino(1998), “ADR as Litigation Lite: Procedural and Evidentiary Norms Embedded with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mory Law Journal, Vol.47, pp.1289-1301.
- John L. Diamond(1983), “Eliminating the “Defect” in Desing Strict products Liability Theory”, THE HASTINHS LAW JOURNAL, Vol.34, pp.529-549
-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2010), “The uneasy case for prdduct liability”, Harvard Law Review, VoI.123 No.1437, pp.1438-1439.
- Prosser(1960), “The Assault Upon the Citadel”, The Yale Law Journal, Vol.69 No.7, pp.1099-1126.

RESTATEMENT (SECOND), TORTS §402A (Tent. Draft No. 10, 1964)

Tricia S. Johns(2004),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s: The Field, The Findings, and The Future",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Vol.22 No.1-2, pp.233-243.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Choong-Lyong Ha
Eun-Bin Kim

• Abstract •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 new clause on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added and is being revised to meet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Article 3(2) of the new clause stipulates a provision for estimating a causal relationship when proving indirect facts to alleviate burden of proof. While consumer rights are increasing and public attention is drawn to consumer issues, problems are still emerg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which has strong consumer rights, was examined to describe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proceed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 that the US has expanded the concept of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rigorous liability,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vable possibility, and litigation accessibility.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thoroughly protected consumers by operating educational and systemic consumer ADR system. As for the possibility of proving, Korea has three provenances, and the United States has one. In the United States, where consumer lawsuits are frequent, lawsuits are more accessible than those in Korea, where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ving is turned into a manufacturer and responsible for proving the case. This study focuses on consumer protectio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n product liability law.

〈Key Words〉 Product Defects, The Burden of Proof, Korean Product Liability, US Product Liability